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신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신교회”라 칭하고, 영어로는 “Joongshin Cell Church”라고 표기한다.

제2조(목적과 비전) 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셀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하나님이 주신 된 건강한 교회를 세계화하는데 목적과 비전이 있다.

제3조(위치) 본 교회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29(별양동 1-9번지)를 주소지로 한다.

제4조(소속) 본 교회는 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30 소재)에 소속한다.

제2장 교인의 자격·권리·의무 등

제5조(교인의 자격) ① 만 18세 이상 된 자로서 본 교회가 정한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본 교회의 교인(이하 “교인”)이 된다. 새신자 교육은 본 교회가 인정한 자가 할 수 있다.

② 만 18세 미만인 자는 교육부서에 속한 자에 한하여 교인이 된다.

제6조(교인의 자격상실) 교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타 교회로 이적한 때
3. 운영위원회로부터 출교가 결정·통보된 때
4. 군입대, 해외근무,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본 교회 정기에 배에 출석하지 않는 때

제7조(교인의 권리) ① 교인은 신급과 연령, 셀에 속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성찬 참여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달리 가진다.

② 세례교인이라 하더라도 셀에 속하여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8조(교인의 의무) 교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기에배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2. 본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성경의 가르침과 자신의 신앙에 따라 헌금과 봉사를 통해 본 교회의 운영과 사역에 참여하여야 한다.
4. 본 교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교인의 징계) ① 본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된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각종 세상의 악과 영적 누룩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하여 본 정관의 내용과 취지에서 벗어난 언행 및 위법한 행위를 한 교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

1. 근신 : 교인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정직 : 직분자의 경우 해당 직분 수행의 일시적인 정지
3. 해직 : 직분자의 경우 해당 직분의 해지
4. 출교 : 교인 자격의 박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 중 출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한한다.

1. 하나님을 명백히 배도한 경우
2. 교회 내에서의 의도적인 불화 또는 분열 조장이 심각한 경우
3. 명백한 이단 교리를 따르거나 이를 전파한 경우
4. 반복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경우
5. 하나님과 본 교회의 이름을 크게 실추시킨 언행을 한 경우

③ 교인에 대한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규칙을 준수한다.

1. 운영위원회는 교인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에서 임명된 조사위원은 본 정관의 내용과 취지에서 벗어난 언행 및 위법한 행위 등을 한 교인에 대하여 인지, 고소, 고발, 자수, 밀고, 고지, 투서 또는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조사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게는 공개한다. 교인 간의 문제인 경우에는 최대한 당사자 간에 화해로 해결되도록 유도한다.
4. 조사 결과 교인의 징계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제1항의 징계를 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5. 운영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결정사항을 공동의회에서 발표하거나 주보를 통해 공지한다.
6. 발표 또는 공지된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에게 그 기속력이 미친다.

제3장 의결기구(공동의회 및 운영위원회)

제10조(공동의회 회원의 자격 및 구성) ① 공동의회 회원은 만 20세 이상 된 자로서, 본 교회 등록 세례교인 중 셀원 명부에 기록된 자 중 셀에 소속된 지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셀에 성실히 참여한 자로 한다. 다만, 군입대, 해외근무, 질병, 요양 등 6개월 이상 출석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공동의회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② 공동의회 의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③ 서기는 모든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동의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공동의회 의장 유고 시
2. 공동의회 의장 본인에 대한 안건 상정 시

제11조(공동의회 소집) ① 공동의회는 공동의회 의장의 소집 또는 재적 운영위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공동의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공동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주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공고(주보, 홈페이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의회 의결방법) ① 공동의회는 공동의회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공동의회 안건은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동의회 의장은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로서 하여금 설명하게 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의회 의결사항) 공동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제·개정안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예산안 및 결산안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담임목사의 청빙, 신임에 관한 사항
4. 교회 거취 및 기타 발의한 의제에 관한 사항

제14조(운영위원회) ① 본 교회와 교인의 대표성을 가지며, 본 교회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은 담임목사와 셀 리더 중에서 임명된 자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은 셀 리더 중에서 담임목사가 추천하고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 ④ 운영위원의 인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 의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 ⑥ 서기는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의장이 정하며, 공동의회 서기업무를 겸임한다.
- ⑦ 서기는 모든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사항을 기록·관리하며, 공동의회 의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의장의 발의 또는 재적 운영위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 ⑨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담임목사 청빙 시에는 반드시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⑩ 운영위원회 안건은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⑪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관 제·개정에 관한 사항
 - 2. 예·결산에 관한 사항
 - 3. 담임목사의 청빙에 관한 사항
 - 4. 제적, 징계에 관한 사항
 - 5. 재산 운용, 그 밖의 본 교회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4장 직분, 직무 및 조직 구성

제15조(담임목사) ① 본 교회 담임목사의 정년은 없으며, 공동의회를 통해 7년마다 재신임을 받는다.

- ② 청빙 담임목사의 재신임 투표는 임기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실시한다.
- ③ 재신임 부결 시, 공동의회와 운영위원회 의장의 직무는 후임 담임목사가 신임 받을 때까지 서기가 대행한다.

- ④ 재신임 부결 시, 운영위원회는 즉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토록 하고, 후임 담임목사가 청빙되면 1년 이내에 신임투표를 실시한다.
- ⑤ 담임목사의 퇴임 시 예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시행한다.
- ⑥ 안식년을 둔다.
- ⑦ 본 교회를 개척한 담임목사는 제1항에 따른 재신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16조(셀 리더의 자격 및 임명) ① 담임목사와 자신이 속한 셀그룹과 자신의 셀원들로부터 리더로서 인정을 받는 교인으로서 전도와 양육, 셀의 번식에 비전을 가진 자를 “셀 리더”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셀 리더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17조(셀 리더의 해임) ① 담임목사와 자신이 속한 셀그룹과 자신의 셀원들로부터 리더로서의 자질이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셀 리더의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셀 리더가 운영위원인 경우, 셀 리더의 해임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한다.

제18조(집행부서) ① 본 교회 집행부서에는 재정부, 선교부, 홍보부, 방송부 및 새신자부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② 집행부서의 부서장은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부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부서장은 부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교육부서) ① 본 교회 교육부서에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및 중고등부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② 교육부서의 부서장은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셀 리더가 겸임한다.
- ③ 교육에 필요한 교사는 부서장이 추천하고,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20조(직분) ① 셀에 참여하여 1년 이상이 경과한 교인은 “집사”로 칭한다.

- ② “명예장로”와 “명예권사”는 담임목사가 추천하고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재산관리

제21조(재정) ① 본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각종 헌금으로 재정을 충당하여 교회를 운영한다.

② 본 교회의 재정은 재정부가 주관한다.

제22조(재산관리) ①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본 교회 소유의 부동산, 동산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② 본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떤 개인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3조(예·결산 및 지출) ①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예·결산안은 재정부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③ 집행부서와 교육부서의 각 부서장은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출신청서를 재정부에 제출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액을 초과하는 재정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정관 개정

제24조(정관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의결한다.

부 칙

(시행 2014년 11월 일)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11월 일 중신교회 공동의회를 통과 즉시 발효한다.

제2조

1. 현 담임목사는 기존 정관의 임기인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분을 유지한다.
2. 차기 담임목사는 현 담임목사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에 의해 신임 받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무토록 한다.
3. 차기 담임목사의 신임투표 대상은 현 담임목사로 한다.

제3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 2021년 9월 26일)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본 교회의 공동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당시 종전 정관에 따른 "중신교회"는 본 정관에 따른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신교회"로 본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본 정관에 따른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신교회"는 종전 정관에 따른 "중신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신교회"가 포괄·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중신교회"의 명의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신교회"의 명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법을 준용한다.